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선람	기 관 의 장

제1006호 2018. 2. 9.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23호 대이리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0
○ 삼척시 고시 제2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30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123호 삼척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 33
○ 삼척시 공고 제146호 신조 공인 공고 ---------- 35
○ 삼척시 공고 제147호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7
○ 삼척시 공고 제149호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2
○ 삼척시 공고 제156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1

공람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 2018-1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9일

삼 척 시 장

1. 사업주체 상호 및 소재지
   - 상 호 : 삼척에버빌디오션지역주택조합 대표 성성제
     - 지안스건설(주) 대표 정성재
   -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00, 1층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6로 3-0, 리치빌딩 402호

2. 사업개요
   - 대지위치 :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102-1번지 외 12필지
   - 대지면적 : 50,296㎡
   - 건축면적 : 5,851.03㎡
   - 연 면 적 : 117,856.54㎡
   - 사업규모 : 아파트 8동 및 부대시설 19동 / 885세대
   - 평형별세대수 : 59㎡형 - 371세대, 74㎡형 - 178세대, 84㎡형 - 326세대
     123㎡형 - 4세대, 143㎡형 - 6세대

■ 층 수 : 지하2층 / 지상 28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벽식구조)

■ 사 업 비 : 187,974백만원

3. 사업시행기간 : 2018. 03. 01 ~ 2020. 03. 30

4.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산지관리법 제1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법 제57조, 같은법 제86조, 같은법 제88조

5. 의제사항 고시 목록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6.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로서 가름하고 지형 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제 협의조서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갈천동 지구단위 계획구역	삼척시 갈천동 102-1번지 일원	-	증)50,611	50,611	

■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위치	면적 (㎡)	변경사유
신설	-	삼척시 갈천동 102-1번지 일원	50,611	·도시성장 및 팽창에 따라 주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지 개발을 위해,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건설 사업부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토지 형질변경과 토지이용계획, 건축물계획이 서로 조화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체계적·계획적 관리 및 개발을 도모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50,611	-	50,611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0,611	감)50,61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50,611	50,611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삼척시 갈천동 102-1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0,611	· 「주택법」에 의한 주택(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1)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	462	9,627 (315)	1	462	9,627 (315)	-	-	-	-	-	-	
중로	1	462	9,627 (315)	1	462	9,627 (315)	-	-	-	-	-	-	주)

(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구적면적임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2	20	보조간선	462	대로 1-3	중로 1-17	일반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119호		
변경	중로	1	22	20~23	보조간선	462 (120)	대로 1-3	중로 1-17	일반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119호	구역 내 폭원확폭	주)

( ) 안은 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22호	중로 1-22호	· 구역 내 폭원 확폭 B=20m → 20~23m	·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 일부구간 폭원 확장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①	-	50,611	갈천동 102-1번지 일원	50,296	공동주택용지
②			갈천동 102-11번지 일원	315	도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갈천동 102-1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불허
		건폐율	·15% 이내
		용적률	·200% 이내
		높이	·최고 28층 이하
		배치	·주변과 어울리면서 변화 있는 경관 연출 및 시각회랑 확보가 가능토록 탑상형 배치 권장
		형태 및 외관	·옥탑 및 지붕은 권역별 이미지 모티브에 부합할 수 있는 형태 권장 ·발코니는 돌출형이나 후퇴형 등 입체효과를 유도 ·주동길이는 5호 조합 이내로 제한 ·저층부에 필로티 구조를 형성하여 개방감 확보 ·각 주동 측벽재질은 페인트 마감과 병행하되 저층부는 자연소재 재질 권장
		색채	·주조색 : 연한 청색계열의 오프화이트(Off-White) ·보조색 : 중간톤의 청색계열 ·강조색 : 짙은 청색계열
		건축선	·도로변(중로) : 3m ·인접대지 및 도로(소로)변 : 6m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구 분	계획내용
차량출입허용구간	· 남측 주출입구 외 남서측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운영
단지 내 도로	· 단지 내 주차장 진입이 가능토록 순환 형으로 단지 내 도로 10m확보
주차장	· 지상 및 지하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 이상 설치
보행동선	· 단지 내 주요시설 및 아파트 진입로를 연계하는 보행동선 확보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 시행지 위치: 삼척시 갈천동 10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중로 1-22호, 소로1-55호) 개설공사

3. 사업의 명칭 : 삼척 갈천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개설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규모				기 능	연 장	기 점	종 점	금 회 시 행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거리(m)	폭원(m)	면적(㎡)
중로	1	22	20~23	보조간선도로	462	대로1-3 마달동 10-2도	중로1-17 갈천동 산76-4	216.4	20~23	9,040
소로	1	55	10	국지도로	301	중로1-2 갈천동 166-4도	중로1-22 마달동 10-2전	54.9	10	566

5. 사업시행자: 삼척에버빌디오션지역주택조합 대표 성성제 외 1인

성 명	삼척에버빌디오션지역주택조합 대표 성성제	주민등록번호	3217-03630 (72****-*******)
업 체 주 소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00,1층(성내동)	연 락 처	033-573-7003
대표자 주소	강원도 동해시 초원2길 12-1, *동 ***호 (용정동, ***원룸)	연 락 처	010-****-****

성 명	지안스건설 주식회사 대표 정성재	법인등록번호	161411-0007697 (61****-*******)
업 체 주 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6로3, 402호 (청수동, 리치빌딩)	연 락 처	02-529-7666
대표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20길 **, ***호 (반포동, 현대***빌라)	연 락 처	010-****-****

6.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 공 : 주택사업계획승인일

나. 준 공 : 2020. 3. 31.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기타권리
				중로1-22호		소로1-55호	계		
				도로	법면	도로			
마달동	7-13	임	11,350	48	-	-	48	삼척에버빌디오션 지역주택조합	지상권 (서수원새마을금고)
	7-14	임	4,088	1,388	1,104	-	2,492		-
	7-16	임	93	-	-	93	93		-
	7-18	임	2,530	762	596	122	1,480	국(산림청)	-
	7-21	임	33	-	-	33	33	삼척에버빌디오션 지역주택조합	지상권 (서수원새마을금고)
	7-22	임	2,808	1,793	840	-	2,633		
	8-1	전	109	-	-	109	109		-
	10-1	전	980	2	-	27	29		지상권 (서수원새마을금고)
	175-5	구	288	14	-	182	196	국(국토교통부)	-
갈천동	102-10	임	1,518	-	232	-	232	삼척에버빌디오션 지역주택조합	-
	102-11	임	4,932	573	1688	-	2,261		지상권 (서수원새마을금고)
계				4,580	4,460	566	9,606		

삼척시 고시 제2018-23호

대이리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공원법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이리군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9일
삼 척 시 장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대이리군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3.664㎢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 변경조서

가. 총 괄

용도지구	기정(A)		변경(B)	변경 후(A+B)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면적(㎢)	비율(%)	
합 계	3.664	100.0	-	3.664	100.0	
공원자연보존지구 (구,자연보존지구)	3.562	97.2	감)0.024	3.538	96.6	
공원자연환경지구 (구,자연환경지구)	0.061	1.7	증)0.024	0.085	2.3	
공원마을지구 (구,자연마을지구)	0.011	0.3	-	0.011	0.3	
공원마을지구 (구,집단시설지구)	0.030	0.8	-	0.030	0.8	

나. 세부 조정 내역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용도지구 변경	계		23,612	
	①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111번지 일원	4,846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변경
	②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103-1 번지 일원	18,765	

다. 공원마을지구(구,자연마을지구) : 변경 없음

라. 공원마을지구(구,집단시설지구)

○ 총괄

구분	기정(A)	변경(B)	변경 후(A+B)	비고
면적(㎢)	0.030	-	0.030	구,집단시설지구 용도지구 변경이후 기준
지구수(개소)	1개소	-	1개소	

○ 지구별 세부내역

구분	면적(㎡)			비고
	기정(A)	변경(B)	변경 후(A+B)	
1개소	30,680	-	30,680	
덕말	30,680	-	30,680	구,집단시설지구 용도지구 변경이후 기준

○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30,680	100.0	30,680	100.0	
공공 시설지	소계	2,990	9.7	3,946	12.9	
	관리사무소	2,295	7.5	3,729	12.2	
	마을회관	695	2.3	217	0.7	
상업 시설지	소계	-	-	4,077	13.3	
	상업시설A	-	-	1,846	6.0	신설
	상업시설B	-	-	816	2.7	신설
	상업시설C	-	-	248	0.8	신설
	상업시설D	-	-	1,167	3.8	신설
기타 시설지	소계	27,690	90.3	22,657	73.8	
	제1주차장	5,390	17.6	2,463	8.0	
	제2주차장	1,630	5.3	1,480	4.8	
	문화시설	-	-	1,739	5.7	신설
	도로	-	-	4,641	15.1	신설
	기타	20,670	67.4	12,334	40.2	

○ 시설계획 결정조서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건폐율(%)	층수	건폐율(%)	높이	
공공 시설지	관리사무소	50%이하	1층이하	50%이하	9m이하	
	마을회관	50%이하	1층이하	50%이하	9m이하	
상업 시설지	상업시설A	-	-	60%이하	12m이하	신설
	상업시설B	-	-	60%이하	12m이하	신설
	상업시설C	-	-	60%이하	12m이하	신설
	상업시설D	-	-	60%이하	12m이하	신설
기타 시설지	제1주차장	20%이하	1층이하	20%이하	9m이하	
	제2주차장	20%이하	1층이하	20%이하	9m이하	
	문화시설	-	-	20%이하	9m이하	신설
	기타	20%이하	1층이하	20%이하	9m이하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 괄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A)	변경(B)	변경 후(A+B)	비고
합 계		110	감) 95	15	
교통·운수 시설	소 계	24	감) 12	12	
	진입도로	3	감) 1	2	
	탐방로	6	-	6	
	등산로	1	감) 1	-	
	주차장	4	감) 2	2	
	헬기장	1	감) 1	-	
	교량	4	감) 4	-	
	보행용철교	3	감) 3	-	
	궤도(모노레일)	2	-	2	
공공시설	소 계	6	감) 4	2	
	관리사무소	1	감) 1	-	
	마을회관	1	감) 1	-	
	매표소	1	감) 1	-	
	공원관문	1	감) 1	-	
	탐방안내소	2	-	2	탐방안내센터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46	감) 45	1	
	공중화장실	6	감) 5	1	일반화장실
	휴게데크	3	감) 3	-	
	전망데크	10	감) 10	-	
	관찰데크	1	감) 1	-	
	목교	4	감) 4	-	
	육각정자	1	감) 1	-	
	초정형파고라	1	감) 1	-	
	평의자	3	감) 3	-	

(계속)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A)	변경(B)	변경 후(A+B)	비고
휴양 및 편익시설	원형야외탁자	2	감) 2	-	
	생태연못	1	감) 1	-	
	돌수로	3	감) 3	-	
	실개울	1	감) 1	-	
	지압보도	1	감) 1	-	
	벽천	2	감) 2		
	방향표시판	4	감) 4	-	
	종합안내판	1	감) 1	-	
	생태해설판	1	감) 1	-	
	돌우물	1	감) 1	-	
보호 및 안전시설	**소 계**	**29**	**감) 29**	-	
	방책시설	2	감) 2	-	
	방호시설	1	감) 1	-	
	물골호안정비	4	감) 4	-	
	물골자연석쌓기	3	감) 3	-	
	물골붕락지정비	2	감) 2	-	
	강제계단	7	감) 7	-	
	강제봉	7	감) 7	-	
	로프	3	감) 3	-	
문화시설	**소 계**	**5**	**감) 5**	-	
	너와집	2	감) 2	-	
	굴피집	2	감) 2	-	
	물레방아	1	감) 1	-	

나. 시설별 세부내역

[1] 교통 · 운수시설

① 진입도로

번호		노선명	구간(시점~종점)	폭 (m)	연장 (km)	비고
계	기정	3개소		-	2.3	
	변경	2개소		-	2.3	
1	기정	구역외 진입도로	공원관문~공원구역	8.0~10.0	0.3	
	변경	진입도로1	공원관문~제1주차장	10.0	1.7	시설 병합 및 연장 정정
2	기정	마을진입도로	공원매표소~골말	4.0~5.0	0.6	
	변경	진입도로2	공원매표소~골말	5.0	0.6	명칭변경
3	기정	진입도로	공원구역계~제1주차장	8.0~10.0	1.4	
	변경	-	-	-	-	폐지 (진입도로1과 병합)

② 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간(시점~종점)	폭 (m)	연장 (km)	비고
계	기정	7개소		-	8.9	
	변경	6개소		-	7.6	감) 1.3km
1	기정	환선굴탐방로	골말~환선굴입구	1.5~4.0	0.7	
	변경	환선굴탐방로	골말~환선굴입구	4.0	0.7	
2	기정	물골탐방로1	물골1교~구 양식장상단	3.0~5.0	0.4	
	변경	물골탐방로1	물골1교~구 양식장상단	5.0	0.4	
3	기정	물골탐방로2	구,양식장상류~물골신규동굴입구	1.5	0.3	
	변경	물골탐방로2	구 양식장상류~대금굴입구	1.5	0.3	
4	기정	물골생태탐방로A	공원매표소상류~물골2교	1.5	0.2	
	변경	물골생태탐방로A	공원매표소상류~물골2교	1.5	0.2	
5	기정	물골생태탐방로B	물골1교하류~무릉천우안	1.5	0.2	
	변경	물골생태탐방로B	물골1교하류~무릉천우안	1.5	0.2	
6	기정	무릉천횡단생태탐방로A	-	1.5	0.1	
	변경	-	-	-	-	폐지
7	기정	등산로	골말~장암재~지덕산~골말	-	7.0	
	변경	골말 탐방로	골말~장암재~지덕산~골말	1.5	5.8	명칭변경 및 실측에 의한 노선연장 정정

③ 주차장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고
계		기정	4개소	25,600	-	-	-	
		변경	2개소	19,810	-	-	-	
1	주차장	기정	집단시설지구 및 주변지역	-	-	-	-	폐지
	-	변경	-	-	-	-	-	(구,집단시설지구 내)
2	주차장	기정	집단시설지구 및 주변지역	-	-	-	-	폐지
	-	변경	-	-	-	-	-	(구,집단시설지구 내)
3	주차장	기정	집단시설지구 및 주변지역	-	-	-	-	
	제3주차장	변경	대이리 170번지 일원	15,790	5% 이하	-	-	
4	주차장	기정	집단시설지구 및 주변지역	-	-	-	-	
	제4주차장	변경	대이리 산117번지 일원	4,020	5% 이하	-	-	

④ 헬기장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고
계		기정	1개소	400	-	-	-	
		변경	-	-	-	-	-	
1	헬기장	기정	백두대간장암재~지각산사이	400	-	-	-	
	-	변경	-	-	-	-	-	폐지 (공원구역 외)

⑤ 교량

번호	교량명		위치	폭 (m)	연장 (㎞)	비고
계	기정	4개소		5.0	0.1	
	변경	-		-	-	
1	기정	교량1	-	-	-	
	변경	-	-	-	-	폐지
2	기정	교량2	-	-	-	
	변경	-	-	-	-	폐지
3	기정	교량3	-	-	-	
	변경	-	-	-	-	폐지
4	기정	교량4	-	-	-	
	변경	-	-	-	-	폐지

⑥ 보행용철교

번호	교량명		위치	폭 (m)	연장 (㎞)	비고
계	기정	3개소		1.2~1.5	0.1	
	변경	-		-	-	
1	기정	철교1	-	-	-	
	변경	-	-	-	-	폐지
2	기정	철교2	-	-	-	
	변경	-	-	-	-	폐지
3	기정	철교3	-	-	-	
	변경	-	-	-	-	폐지

⑦ 궤도(모노레일) (기정 삭도)

번호	노선명		구간(시점~종점)	연장 (㎞)	연장 증감	비고
계		기정	2개소	-	-	
		변경	2개소	0.8	-	
1	삭도(모노레일1)	기정	대이리 산111 일원	-	-	
	대금굴모노레일	변경	물골탐방안내소~대금굴	0.4	-	
2	삭도(모노레일2)	기정	대이리 103-1 일원	-	-	
	환선굴모노레일	변경	골말탐방안내소~환선굴	0.4	-	

[2] 공공시설

① 관리사무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계		기정	1개소	960	-	1층	1	
		변경	-	-	-	-	-	
1	관리사무소	기정	대이리 189 일원	960	-	1층	1	
	-	변경	-	-	-	-	-	폐지 (구,집단시설지구 내)

② 마을회관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계		기정	1개소	350	-	1층	1	
		변경	-	-	-	-	-	
1	마을회관	기정	대이리 174-2 일원	350	-	1층	1	
	-	변경	-	-	-	-	-	폐지 (구,집단시설지구 내)

③ 매표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계		기정	1개소	-	-	1층	1	
		변경	-	-	-	-	-	
1	매표소	기정	대이리 225-1 일원	-	-	1층	1	
	-	변경	-	-	-	-	-	폐지 (구,집단시설지구 내)

④ 공원관문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계		기정	1개소	350	-	1층	1	
		변경	-	-	-	-	-	
1	공원관문	기정	대이리 109-2 일원	350	-	1층	1	
	-	변경	-	-	-	-	-	폐지 (공원구역 외)

⑤ 탐방안내소 (기정 탐방안내센터)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계		기정	2개소	3,270	-	-	2	
		변경	2개소	8,161	-	-	2	
1	물골 비지터센터	기정	대이리 201-5 일원	1,190	19.3	1층	1	
	물골탐방안내소 (모노레일 하부정거장 포함)	변경	대이리 201-5 일원	3,705	20% 이하	9m 이하	1	공원시설 명칭적용 면적변경
2	골말 비지터센터	기정	대이리 산117 일원	2,080	20.3	2층	1	
	골말탐방안내소 (모노레일 하부정거장 포함)	변경	대이리 산103-1일원	4,456	20% 이하	9m 이하	1	공원시설 명칭적용 면적변경

[3] 휴양 및 편익시설

① 공중화장실 (기정 일반화장실, 간이화장실)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계		기정	6개소	400	-	-	23	
		변경	1개소	300	-	-	1	
1	일반화장실1	기정	제1주차장 북측	400	-	1층	1	
	-	변경	-	-	-	-	-	폐지 (구,집단시설지구 내)
2	일반화장실2	기정	관음골 입구	-	-	1층	1	
	제3주차장 화장실	변경	대이리 224-10	300	20% 이하	6m 이하	1	
3	간이화장실1	기정	공원초입 주간선도로변	-	-	-	1	
	-	변경	-	-	-	-	-	폐지
4	간이화장실2	기정	물골초입	-	-	-	1	
	-	변경	-	-	-	-	-	폐지
5	간이화장실3	기정	골말 덕항산 등산로입구	-	-	-	4	
	-	변경	-	-	-	-	-	폐지
6	간이화장실4	기정	환선굴인근	-	-	-	15	
	-	변경	-	-	-	-	-	폐지

② 휴게데크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연장 (m)	폭 (m)	개수	비고
계		기정	3개소	67.2	-	-	-	
		변경	-	-	-	-	-	
1	A	기정	산책로B 초입	27.4	-	-	-	
	-	변경	-	-	-	-	-	폐지
2	B	기정	산책로B 중간	18.4	7.36	2.5	-	
	-	변경	-	-	-	-	-	폐지
3	C	기정	산책로A 하류	21.4	5.05	3.0	-	
	-	변경	-	-	-	-	-	폐지

③ 전망데크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연장 (m)	폭 (m)	동수	비고
계		기정	10개소	408.0	-	-	-	
		변경	-	-	-	-	-	
1	A	기정	산책로A 중간	9.0	6.0	1.5	-	
	-	변경	-	-	-	-	-	폐지
2	B	기정	산책로A 상류	9.0	6.0	1.5	-	
	-	변경	-	-	-	-	-	폐지
3	C	기정	산책로B 물골변	37.9	-	-	-	
	-	변경	-	-	-	-	-	폐지
4	D	기정	물골2교 인접지 상류	114.8	20.0	4~5	-	
	-	변경	-	-	-	-	-	폐지
5	E	기정	물골2교 인접지 상류	40.0	10.0	4.0	-	
	-	변경	-	-	-	-	-	폐지
6	F	기정	물골2교 상류	27.7	3.5	3.5	-	
	-	변경	-	-	-	-	-	폐지
7	G	기정	물골2교 상류	27.8	4.7	4.7	-	
	-	변경	-	-	-	-	-	폐지
8	H	기정	물골탐방로2 하류	13.4	9.0	1.5	-	
	-	변경	-	-	-	-	-	폐지
9	I	기정	물골탐방로2 중간	8.4	5.5	1.5	-	
	-	변경	-	-	-	-	-	폐지
10	J	기정	물골탐방로2 상류	120.0	40.0	3.0	-	
	-	변경	-	-	-	-	-	폐지

④ 관찰데크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연장 (m)	폭 (m)	동수	비고
계		기정	1개소	116.0	-	-	-	
		변경	-	-	-	-	-	
1		기정	물골2교 상류 하천변	116.0	80.0	1.5	-	
	-	변경	-	-	-	-	-	폐지

⑤ 목교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연장 (m)	폭 (m)	동수	비고
계		기정	4개소	54.5	-	-	-	
		변경	-	-	-	-	-	
1		기정	물골2교 상류 생태연못	6.0	4.0	1.5	-	
	-	변경	-	-	-	-	-	폐지
2		기정	물골2교 상류 생태연못	6.0	4.0	1.5	-	
	-	변경	-	-	-	-	-	폐지
3		기정	골말비지터센터 인근	14.0	10.0	1.4	-	
	-	변경	-	-	-	-	-	폐지
4		기정	골말비지터센터 인근	28.5	19.0	1.5	-	
	-	변경	-	-	-	-	-	폐지

⑥ 육각정자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연장 (m)	폭 (m)	동수	비고
계		기정	1개소	20.25	-	-	1	
		변경	-	-	-	-	-	
1		기정	골말비지터센터 인근	20.25	4.5	4.5	1	
	-	변경	-	-	-	-	-	폐지

⑦ 초정형파고라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연장 (m)	폭 (m)	동수	비고
계		기정	1개소	26.01	-	-	1	
		변경	-	-	-	-	-	
1		기정	물골2교 비지터센터 정면	26.01	5.1	5.1	1	
	-	변경	-	-	-	-	-	폐지

⑧ 평의자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연장 (m)	폭 (m)	동수	비고
계		기정	3개소	-	-	-	-	
		변경	-	-	-	-	-	
1		기정	물골탐방로2 초입	-	0.42	1.8	-	
	-	변경	-	-	-	-	-	폐지
2		기정	물골탐방로2 초입	-	0.42	1.8	-	
	-	변경	-	-	-	-	-	폐지
3		기정	물골탐방로2 초입	-	0.42	1.8	-	
	-	변경	-	-	-	-	-	폐지

⑨ 원형야외탁자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연장 (m)	폭 (m)	동수	비고
계		기정	2개소	-	-	-	-	
		변경	-	-	-	-	-	
1		기정	물골2교 상류	-	-	-	-	H=0.75m
	-	변경	-	-	-	-	-	폐지
2		기정	물골2교 상류	-	-	-	-	H=0.75m
	-	변경	-	-	-	-	-	폐지

⑩ 생태연못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고
계		기정	1개소	547.5	-	-	-	
		변경	-		-	-	-	
1		기정	물골2교 상류	547.5	-	-	-	
	-	변경	-	-	-	-	-	폐지

⑪ 돌수로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연장 (m)	폭 (m)	동수	비고
계		기정	3개소	-	-	-	-	
		변경	-	-	-	-	-	
1		기정	물골1교~생태탐방로B입구	-	72.2	0.5	-	
	-	변경	-	-	-	-	-	폐지
2		기정	물골1교~물골2교	-	228.1	0.5	-	
	-	변경	-	-	-	-	-	폐지
3		기정	물골2교~물골탐방로2	-	192.3	0.5	-	
	-	변경	-	-	-	-	-	폐지

⑫ 실개울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연장 (m)	폭 (m)	동수	비고
계		기정	1개소	-	-	-	-	
		변경	-	-	-	-	-	
1		기정	물골탐방로2 초입	-	20.0	1.5	-	
	-	변경	-	-	-	-	-	폐지

⑬ 지압보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연장 (m)	폭 (m)	동수	비고
계		기정	1개소	-	-	-	-	
		변경	-	-	-	-	-	
1		기정	물골탐방로2 초입	-	20.0	1.5	-	
	-	변경	-	-	-	-	-	폐지

⑭ 벽천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연장 (m)	폭 (m)	동수	비고
계		기정	2개소	-	-	-	-	
		변경	-	-	-	-	-	
1	A	기정	물골2교 상류	-	-	8.0	-	H=5.0m
	-	변경	-	-	-	-	-	폐지
2	B	기정	물골2교 인접지	-	-	40.0	-	H=5.0m
	-	변경	-	-	-	-	-	폐지

⑮ 방향표지판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연장 (m)	폭 (m)	동수	비고
계		기정	4개소	-	-	-	-	
		변경	-	-	-	-	-	
1		기정	목조교량 입구	-	-	1.0	-	H=1.5m
	-	변경	-	-	-	-	-	폐지
2		기정	물골1교 주변	-	-	1.0	-	H=1.5m
	-	변경	-	-	-	-	-	폐지
3		기정	물골2교 주변	-	-	1.0	-	H=1.5m
	-	변경	-	-	-	-	-	폐지
4		기정	물골탐방로2 진입부	-	-	1.0	-	H=1.5m
	-	변경	-	-	-	-	-	폐지

⑯ 종합안내판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연장 (m)	폭 (m)	동수	비고
계		기정	1개소	-	-	-	-	
		변경	-	-	-	-	-	
1		기정	비지터센터 정면	-	2.7	0.42	-	H=2.27m
	-	변경	-	-	-	-	-	폐지

⑰ 생태해설판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연장 (m)	폭 (m)	동수	비고
계		기정	1개소	-	-	-	-	
		변경	-	-	-	-	-	
1		기정	비지터센터 상류	-	2.7	0.42	-	H=2.27m
	-	변경	-	-	-	-	-	폐지

⑱ 돌우물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연장 (m)	폭 (m)	동수	비고
계		기정	1개소	-	-	-	-	
		변경	-	-	-	-	-	
1		기정	너와집 경내	-	2.7	0.42	-	¢1.0m
	-	변경	-	-	-	-	-	폐지

[4] 보호 및 안전시설

① 방책시설

번호	시설명		위치	폭 (m)	연장 (㎞)	비고
계	기정	2개소		-	0.93	
	변경	-		-	-	감) 0.93
1	기정	방책시설1	관음1교~매표소부근	-	0.65	
	변경	-	-	-	-	폐지
2	기정	방책시설2	물골1교~골말식당 간이기념품점	-	0.28	
	변경	-	-	-	-	폐지

② 방호시설

번호	시설명		위치	폭 (m)	연장 (km)	비고
계	기정	1개소		-	0.06	
	변경	-		-	-	
1	기정	방호시설	마을진입도로 물골식당 앞	-	0.06	
	변경	-	-	-	-	폐지

③ 물골호안정비

번호	시설명		위치	폭 (m)	연장 (km)	비고
계	기정	4개소		-	0.13	
	변경	-		-	-	
1	기정	물골호안정비1	물골1교인접지 우안	-	0.02	H=6.0m
	변경	-	-	-	-	폐지
2	기정	물골호안정비2	물골2교 하류 좌안	-	0.02	H=8.0m
	변경	-	-	-	-	폐지
3	기정	물골호안정비3	물골상류지역 물골우안	-	0.06	H=1.5~2.5m
	변경	-	-	-	-	폐지
4	기정	물골호안정비4	물골상류지역 물골우안(최상류)	-	0.03	H=1.5~2.5m
	변경	-	-	-	-	폐지

④ 물골자연석쌓기

번호	시설명		위치	폭 (m)	연장 (km)	비고
계	기정	3개소		-	0.36	
	변경	-		-	-	
1	기정	물골자연석쌓기1	물골1교~물골2교간 절토부	-	0.14	H=1.0~1.5m
	변경	-	-	-	-	폐지
2	기정	물골자연석쌓기2	물골1교~물골2교간 성토부	-	0.04	H=1.0~1.5m
	변경	-	-	-	-	폐지
3	기정	물골자연석쌓기3	물골2교~물골탐방로2	-	0.18	H=1.0~1.5m
	변경	-	-	-	-	폐지

⑤ 물골붕락지정비

번호	시설명		위치	폭 (m)	연장 (km)	비고
계	기정	2개소		-	-	
	변경	-		-	-	
1	기정	물골붕락지정비1	구 양어장 상류지역 물골서측	-	-	70㎡
	변경	-	-	-	-	폐지
2	기정	물골붕락지정비2	구 양어장 최상류지역 물골서측	-	-	430㎡
	변경	-	-	-	-	폐지

⑥ 강제계단

번호	시설명		위치	폭 (m)	연장 (km)	비고
계	기정	7개소		-	-	
	변경	-		-	-	
1	기정	강제계단1	환선굴탐방로~장암재	1.2	0.16	
	변경	-	-	-	-	폐지
2	기정	강제계단2	쉼터(고무덧골)~골말	1.2	0.1	
	변경	-	-	-	-	폐지
3	기정	강제계단3	쉼터(고무덧골)~골말	1.2	0.02	
	변경	-	-	-	-	폐지
4	기정	강제계단4	쉼터(고무덧골)~골말	1.2	0.17	
	변경	-	-	-	-	폐지
5	기정	강제계단5	쉼터(고무덧골)~골말	1.2	0.01	
	변경	-	-	-	-	폐지
6	기정	강제계단6	쉼터(고무덧골)~골말	1.2	0.01	
	변경	-	-	-	-	폐지
7	기정	강제계단7	쉼터(고무덧골)~골말	1.2	0.01	
	변경	-	-	-	-	폐지

⑦ 강제봉

번호	시설명		위치	폭 (m)	연장 (km)	비고
계	기정	7개소		-	-	
	변경	-		-	-	
1	기정	강제봉1	쉼터(고무덧골)~골말	-	0.1	
	변경	-	-	-	-	폐지
2	기정	강제봉2	쉼터(고무덧골)~골말	-	0.11	
	변경	-	-	-	-	폐지
3	기정	강제봉3	쉼터(고무덧골)~골말	-	0.03	
	변경	-	-	-	-	폐지
4	기정	강제봉4	쉼터(고무덧골)~골말	-	0.23	
	변경	-	-	-	-	폐지
5	기정	강제봉5	쉼터(고무덧골)~골말	-	0.16	
	변경	-	-	-	-	폐지
6	기정	강제봉6	쉼터(고무덧골)~골말	-	0.06	
	변경	-	-	-	-	폐지
7	기정	강제봉7	쉼터(고무덧골)~골말	0.6	0.01	
	변경	-	-	-	-	폐지

⑧ 로프

번호	시설명		위치	폭 (m)	연장 (km)	비고
계	기정	3개소		-	-	
	변경	-		-	-	
1	기정	로프1	환선굴탐방로~장암재	-	0.59	
	변경	-	-	-	-	폐지
2	기정	로프2	쉼터(고무덧골)~골말	-	0.14	
	변경	-	-	-	-	폐지
3	기정	로프3	쉼터(고무덧골)~골말	-	0.24	
	변경	-	-	-	-	폐지

[5] 문화시설

① 너와집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고
계	기정	2개소		2,349	-	-	-	
	변경	-		-	-	-	-	
1	기정	너와집1	신기면 대이리 181번지	1,739	-	-	-	
	변경	-	-	-	-	-	-	폐지 (구,집단시설지구 내)
2	기정	너와집2	물골지역	610	-	-	-	
	변경	-	-	-	-	-	-	폐지

② 굴피집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고
계	기정	2개소		2,349	-	-	-	
	변경	-		-	-	-	-	
1	기정	굴피집1	신기면 대이리 181번지	1,739	-	-	-	
	변경	-	-	-	-	-	-	폐지 (구,집단시설지구 내)
2	기정	굴피집2	물골지역	610	-	-	-	
	변경	-	-	-	-	-	-	폐지

③ 물레방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고
계	기정	1개소		90				
	변경	-		-	-	-	-	
1	기정	굴피집1	신기면 대이리 173-1번지	90	-	-	-	
	변경	-	-	-	-	-	-	폐지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계획 변경 연월일 : 2018. 2. 9.

8. 기타 : 관계도서를 삼척시청 관광정책과(033-570-384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삼척시 고시 제2018 - 2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2. 09.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618 (갈천동) 외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2. 0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147-2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618 (갈천동)	20180209	건물신축	20090626	동지역해안도로(기존도로명)	
2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개산리 산 20-3, 33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개산길 430-60	20180209	건물신축	20090626	종점부행정구역명사용(노곡면 개산리)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13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오리길 96	2018020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마을지명사용	
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42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실길 2	20180209	건물신축	20090626	지역명(마을명) 사용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45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안길 542-86	2018020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위치 활용	
6		이	하	여	백		
7							
8							
9							
10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5 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147-2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618 (갈천동)	20180209	건물신축	20090626	동지역해안도로(기존도로명)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개산리 산20-3, 33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개산길 430-60	20180209	건물신축	20090626	종점부행정구역명사용(노곡면 개산리)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13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오리길 96	2018020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마을지명사용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42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실길 2	20180209	건물신축	20090626	지역명(마을명)사용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45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안길 542-86	2018020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위치활용	

삼척시공고 제2018-123호

삼척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2-17 외 6건) 공사완료 공고

삼척시고시 제2014-109호(2014.8.11.)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최초 실시계획 협의되고, 삼척시고시 제2018-18호(2018.02.02.)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시 최종 실시계획 의제 협의 된 도시계획시설(중로2-17호선 외 5건)에 대하여 공사완료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삼 척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삼척시 교동 산127-1번지 외 25필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삼척시 도시계획시설(중로 2-17, 중로 1-19, 중로 2-4, 소로 3-259, 소로 3-260, 경관녹지)
   ○ 명칭: 교동 신영지웰라티움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도 로

규모				기 능	연 장	기 점	종 점	금 회 시 행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거리(m)	폭원(m)	면적(㎡)
중로	2	17	15	집산도로	62	대로3-5 교동100-5도	소로1-36 교동99-3전	62	15	1,030.3
중로	1	19	20	집산도로	418	대로3-5 교동100-5도	중로2-18 교동219-1도	172	20	3,482.6
중로	2	4	15	집산도로	543	중로1-18 교동207-4전	중로1-19 교동 산139임	160	15	3,752.1
소로	3	259	6	국지도로	234	중로2-4 교동산127-1임	소로1-15 교동산135-1임	164	6	992.5
소로	3	260	4	국지도로	147	중로1-19 교동산137임	소로3-259 교동산135-1임	147	4	3,915.2

나. 경관녹지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금회시행	사 업 량
9	교동택지변녹지	경관녹지	교동 733-2공 일원	1,730	1,730	· 녹생토 A=609㎡, · 데크로드(B=2.0) L=170.0m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자산신탁(주) 대표 김 규 철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5. 사업기간
   ○ 착수일: 2015. 5. 15.
   ○ 준공일: 2018. 1. 31.

삼척시 공고 제2018-146호

신조 공인 공고

삼척시공인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삼 척 시 장

○ 등 록 사 유 : 2018. 2. 6. 일자 통합민원발급기 설치
○ 등록 연월일 : 2018. 2. 6.
○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규격	인 영	등록사유	비고
신조 공인	삼척시장인 (민원실통합기전용)	3.1㎝ * 3.1㎝ (정방형)		통합민원발급기 설치	
	삼척시장인 (성내동통합기전용)	3.1㎝ * 3.1㎝ (정방형)			
	삼척시장인 (교동통합기전용)	3.1㎝ * 3.1㎝ (정방형)			
	도계읍장인 (민원실통합기전용)	2.7㎝ * 2.7㎝ (정방형)			

구분	공 인 명	규격	인 영	등록사유	비고
신조 공인	원덕읍장인 (민원실통합기전용)	2.7㎝ * 2.7㎝ (정방형)		통합민원발급기 설치	
	근덕면장인 (민원실통합기전용)	2.7㎝ * 2.7㎝ (정방형)			
	성내동장인 (민원실통합기전용)	2.7㎝ * 2.7㎝ (정방형)			
	교동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	2.7㎝ * 2.7㎝ (정방형)			

삼척시 공고 제2018 - 147호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융자추천 대상 업종 중 도·소매업과 일반음식업의 경우 매장면적에 따라 융자추천 제한 및 추천 한도액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매장 면적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한 융자추천 신청 기회부여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융자추천 대상 업종 중 매장면적의 요건 완화(안 제2조)
- 융자추천 대상 중 도·소매업과 일반음식점업의 매장면적 요건 폐지

나. 융자금 추천 업종의 융자추천 한도액 균등 조정(안 제6조)
- 도·소매업과 일반음식점업의 매장면적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삼척시장(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
- ❍ 전화 : 033-570-3366
- ❍ FAX : 033-570-3140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http://samcheok.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및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도매 및 소매업체

6.「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음식점업

제6조 제4호, 6호 및 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소매업체 및 일반음식점업 : 5천만원 이내

6. 이·미용업, 세탁업 : 3천만원 이내

7.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융자추천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종업원 300인 이하를 고용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하 "육성자금" 이라 한다) 융자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3. (생 략) 4. 도·소매업체로서 매장면적이 26.45제곱미터 이상인 업체 5. (생 략) 6.「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매장면적이 33.06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업 7.~11. (생 략)	제2조(융자추천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종업원 300인 이하를 고용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하 "육성자금" 이라 한다) 융자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3. (현행과 같음) 4.「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도·소매업 5. (현행과 같음) 6.「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음식점업 7.~11.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금추천한도액) 지원대상 업체의 융자추천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한다. 1.~3. (생 략) 4. 매장면적 66.12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체 및 일반음식점업 : 5천만원 이내 5. (생 략) 6. 이·미용업, 세탁업 및 매장면적 33.06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 3천만원 이내 7. 도·소매업으로서 매장면적 26.45제곱미터 이상 업체 : 3천만원 이내 8. 기타 소상공인 : 3천만원 이내	제6조(융자금추천한도액) 지원대상 업체의 융자추천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도·소매업 및 일반음식점업 : 5천만원 이내 5. (현행과 같음) 6. 이·미용업, 세탁업 : 3천만원 이내 7. 삭 제 8. (현행과 같음)

[붙임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 례 명 :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8 - 149호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2018. 1. 1. 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지출관제도에 따라 회계부서간 기능 조정 및 회계책임 근거를 마련하고,

나. 법령에 근거없는 과도한 절차와 현행 제도의 미비사항을 반영·정비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겸직 허용 소규모 관서의 직무대리 규정 보완(제3조)

- 회계관직 공무원의 겸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소규모 관서의 직무대리 규정 정비

나. 자금배정 및 지출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부서간 기능 조정(제47조)

- (현행)징수종합계획 및 지출종합계획 수립 : 세무과장

- (개정)징수종합계획 : 세무과장 / 지출종합계획 : 통합지출관(회계부서)

다.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 권리제한 개선(제46조, 제151, 제152조)

- 과도한 채권 독촉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
- 법령에 근거없는 세외수입 징수 절차 규정 삭제

4. 입법예고기간 : 2018. 02. 08. ~ 02. 27.(20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회계과

○ 전화 : 033-570-3271 ○ FAX : 033-570-3135

※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5.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붙임 1】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제1항 중 "반환"을 "환급"으로,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및 삼척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지방세기본법 및 삼척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2항 중 "과태료·과징금"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를 "징수"로, "개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실장과 통합지출관"으로, 제2항 중 "세무과장은"을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 징수종합계획서와"로, "통합지출관·본청"을 "본청"으로 하고, 제3항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51조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52조 제목 이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 환급 ----------「지방세기본법」 및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과징금 ---------- 징수 ----------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무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세입예산 월별징수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감사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실·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 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통합지출관,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 기획감사실장과 통합지출관 ----------.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 본청 ----------. ③ 통합지출관----------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생 략) 1.~ 2. <생 략>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 략>	----------.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지방세징수법」----------. 4. <현행과 같음>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 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별지 제10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 설>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52조(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 1 관 서	기 타 관 서
의 회 사 무 과 농업기술센터 보 건 소 지역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평 생 학 습 관 내수면개발사업소 엑스포타운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신 설>	도계보건출장소 원덕보건출장소 임 시 관 서

제 1 관 서	기 타 관 서
의 회 사 무 과 농업기술센터 보 건 소 <삭 제> 상하수도사업소 <삭 제> 수산자원센터 문화예술센터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	도계보건출장소 원덕보건출장소 임 시 관 서

【붙임 3】

관 계 법 령

□ 지방회계법

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정원이 5명 이내인 관서에서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등 출납원을 겸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납부의 고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독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회계과 회계과장 김 인 천
연락처	(033) 570 - 3270

【붙임 5】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8 - 156호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
- 기금 활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본원칙 제시로 기금 안정성 확보

3.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구체화(안 제 3조)

4. 입법예고기간 : 2018. 02. 08. ~ 02. 27.(20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안전총괄과
○ 전화 : 033-570-3881 ○ FAX : 033-570-3178
※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5.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라. 재난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홍보물제작, 재해우려지역·시설 안내판 제작
   마.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바.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사. 지방하천 내 소규모 준설, 풀베기 등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체계) 구축 및 보수·보강
   가. 자동우량 경보시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재난감시용 CCTV설치
   나.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상시계측시설
   다. 지진가속도계측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4.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다.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나.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 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7.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0. 그 밖에 재난과 관련하여 삼척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4조의 용도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긴급구조 및 재난수습에 필요한 장비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삭제 6. 그 밖에 재난과 관련하여 삼척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기금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라. 재난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홍보물제작, 재해우려지역·시설 안내판 제작 마.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바.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사. 지방하천 내 소규모 준설, 풀베기 등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

한 재난 예·경보시설(체계) 구축 및 보수·보강
가. 자동우량 경보시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재난감시용 CCTV설치
나.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상시계측시설
다. 지진가속도계측시설, 지진해일 경보시설
4.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다.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나.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

	인 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7.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0. 그 밖에 재난과 관련하여 삼척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3]

관 계 법 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4]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재난관리기금 운용 사업비

○ 관련조문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분석시점에서의 추계결과 변동사항 있음.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계

나. 추계결과

- 2018년 ~ 2022년 : 연간 금240,000천원
-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출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200,000
사업비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200,000
재원 조달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200,000
자체 수입	소 계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200,000
	지방세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200,000
	세외수입						

다. 재원조달 방안

- 2018년 ~ 2022년 : 지방세 일반회계(전출금)

3. 작성자

작성자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박문철
연락처	(033) 570 -3880

【붙임 5】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